



제330회 임시회

2014.06.11.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4년 06월 02일
- 회부일자: 2014년 06월 05일

3. 제안이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위헌결정 판결일: 2012.8.23.)에 따라 특별장학생의 요건 및 선정 등에서 중학교를 제외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특별장학생의 요건 및 정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1) 특별장학생의 범위에서 중학교 입학대상자 제외
- 2) 특별장학생의 정수에서 중학교 제외

나. 특별장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1) 특별장학생의 선정에서 중학교 제외

다.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1)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폐지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입학대상자 중 특별장학생을 선발하여 재학기간 학비¹⁾를 면제하였으나,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12.8.23.)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 중 중학교 특별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중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관계 법령 발췌

□ 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 등 위헌소원
[2010헌바220, 2012.8.23.]

【주문】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요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구 초·중등교육법[시행 2012.3.1.] [법률 제11219호, 2012.1.26.]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3.24.>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외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

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단순위헌, 2010헌바220, 2012.8.23.,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 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교육기본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